

이혼신고

○이혼신고서

이혼할때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내는 것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본식으로 이혼할 때는 호적법규정에 따라서 이혼신고서를 내기 바랍니다.

이혼했을 때에는 본국정부에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

이혼성립 요건은 나라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신고하는 기간 : 임의(조정, 화해, 인낙, 심판, 판결이혼은 성립·확정으로부터 10 일 이내)

(2) 신고하는 사람 : 남편과 아내(조정 등에 의한 이혼은 신청자)

(3) 신고하는 곳 : 남편과 아내중에서 어느 한사람의 주소가 있는 곳, 또는
본적이 있는 곳의 시구정촌 사무소(배우자가 일본인인 경우)

니시노미야시에서는

니시노미야시청 시민과 0798-35-3128

또는 각 지소(토·일·공휴일 제외), 서비스센터(토·일·공휴일 제외), ACTA 니시노미야 스테이션

(4) 필요서류

① 이혼신고서 (시구정촌 사무소에 있습니다. 합의 이혼인 경우, 증인으로서는 성인 2 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②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등)

③혼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부부의 경우)

④본인확인서류(운전면허증, 여권 등)

⑤ 조정(화해, 인낙)조서의 등본 혹은 재판(심판)의 판결서 또는 확정증명서(재판소에서 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만 필요. 이 경우에는 신고서 내의 증인과 상대방의 서명은 필요없음)

※주 시구정촌에 따라서는 신청하는 곳, 신청방법, 서비스 종류, 명칭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과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재류자 가운데 배우자로서 「가족체류」「특정활동(ハ)」 「일본인의 배우자 등」 및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분이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했을 경우에는 14 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출두 또는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우송에 의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속방법은 관할의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문의해 주십시오.